

2020년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화) 사업자 제2차 신규·갱신 인증 신청 안내

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·시행(’15.6.4.)에 따라 2020년 신규·갱신 인증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0. 6.

사단법인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장
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7.13(월) (*일정 변동 될 수 있음, 접수 마감 후 2주간 서면·현장실사 실시)
- 신청대상 :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신규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
- 인증자격요건

구분	세부내용
대상주체	▽ 대상주체 여부 -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·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
사업장 입지	▽ 농촌지역 입지여부 -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규정된 농촌지역
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(품목)	▽ 농촌융복합형태 여부(1차×2차), (1차×3차), (1차×2차×3차) ▽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-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, 제출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*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신청 ▽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(국산)을 사용하고, 시·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%이상으로 하되,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·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-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, 매매계약서, 거래내역서, 계산서 등 증빙 확인
사업성과	▽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'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' 달성 및 증빙 -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: 40백만원('17년 38,239천원, '18년 42,066천원) - (매출액)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-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,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,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
기타	▽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- (일자리) 4대보험 신고서류, 일용직 신고서,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- (지역농산물) 자가생산 증명서,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

□ 인증 신청서류 (www.제주6차산업.com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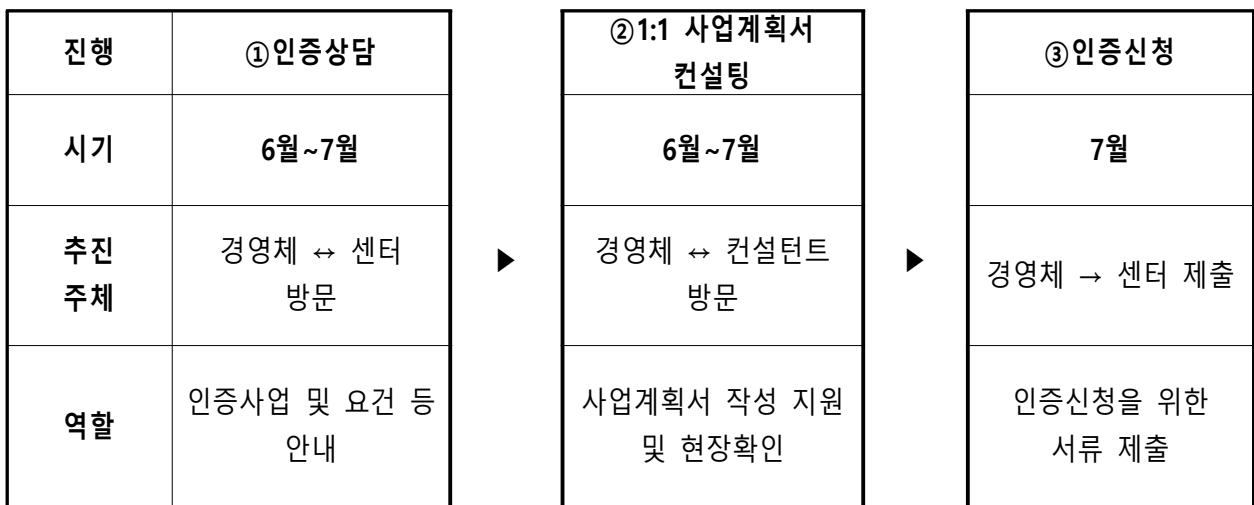
- ▶ 인증·갱신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(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),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의 경우), 사업자 등록증, 국가에서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
□ 인증신청 접수 :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

- 접수방법 : 직접 제출(제주시 첨단로 213-65, 2층) 또는 우편접수(2020.7.13.(월) 18:00 도착에 한함)

□ 인증 신청을 위한 소규모그룹 컨설팅 실시

- 접수방법 : 자가진단표 작성 후 이메일 제출(stormand@jeju6th.kr)
- *갱신 인증 경영체의 경우 자가진단표 불필요
- 자가진단표 (www.제주6차산업.com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)



*사업계획서 컨설팅시, 사전에 경영체가 사업계획서 초안작성 완료 해야함

□ 문의처 :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

전화 : 064-722-7917 / 메일 : stormand@jeju6th.kr / Fax 064-722-7919